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 차〉

3. 사모펀드 등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송희경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 (과)	자산운용과	작 성	직급	사무관
작성자 인적시항	국장	이윤수	자	연락처	02-2100-2673
	과장	고상범		이메일	gehshine@korea. kr

2021. 6.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사모펀드 등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기본	2.규제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6제2항, 제7-41조의9제1항, 제7-41조의14제1항, 별표제2의3				
정보	3.위임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3호·제5호, 제271조의 14제1항제2호, 제271조의21제3항				
	4.유형	신설/강화 5.입법예고 2021.6.23. ~ 2021.8.2.				
		① 일반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확대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업자 및 상출제 한 소속 기업집단의 일정 수준을 넘는 일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서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여 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				
	│6.추진배경 │ 및 정부개입	* 일반 사모펀드도 경영 참여목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				
	필요성	② 다수의 子펀드들에 의한 母펀드 투자시(30%이상 투자) 子펀드의 투자자를 母펀드에 합산하여 산정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합산 예외규정을 두어 합리적 제도 운영 장치 마련 필요				
		③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단순(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가능함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의 요건을 신설할 필요				
규제의		①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의 투자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펀드의 설정·설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그 비율은 30%로 정함				
540	7.규제내용	② 운용과정에서 1)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2)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3)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母펀드에 대한 子펀드의 투자비중이 30% 이상이더 라도 子펀드의 투자자수를 母펀드에 합산하지 않는 예외 인정				
		③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을 3년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 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갖추도록 함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집합투자업자,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① 일반 사모펀드를 악용한 집합투자업자의 영향력 확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시도를 적시 감시하는 등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유도				

		② 사모펀드 운용상 특정한 경우에는 투자자수 합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회피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운영 가능						
		③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요건을 신설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역의 전문성/준법·윤리의식을 제고하여 기관전용 사					
		문용리스크 김	¦소 - ┌		1	선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ᆔᄀᆀᅱ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10.비용편익분석 규제의 (단위:백만원) 적정성		주요내용				_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기	' }	경쟁영	향평가	중	등기영향평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음 해당 사항 없음 형		히	해당 사항 없음	
	1 2 . 일 몰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							
7151	사후 규제							
기타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2	년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7-41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
<u>투자기구</u> 의 보고 서류 등)	<u>구</u> 의 보고 서류 등)
<u> <신 설></u>	② 영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
	<u>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u>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
	<u>한다.</u>
제7-41조의9(<u>경영참여형 사모집합</u>	제7-41조의9(<u>기관전용 사모집합투</u>
<u>투자기구</u> 의 사원 등)	<u>자기구</u> 의 사원 등)
<u> </u>	① 영 제271조의14제1항제2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
	를 말한다.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의 <u>등록</u>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의 <u>등록</u>
<u>절차</u> 등)	<u>요건 및</u> 절차 등)
<u><신 설></u>	① 영 제271조의21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①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가능하므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설립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 * ex) 집합투자업자 자신(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대기업집단의 영향력 확대에 악용
 - 즉시 보고사유 중 **투자비율*을 설정한 내용**은 그 구체적 수치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비율을 명확히 할 필요**
 - * ① 같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일반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 투자한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 투자한 경우
 - ③ 투자신탁등의 자가 출자한 지분의 합이 일반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 ②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사 子펀드가 母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규정
 -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합산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필요
- ③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단순(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가능함에 따라이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 운용인력의 요건을 신설할 필요

□ 개선방안

①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에 대한 즉시 보고사항을 다룬 현행 제도* 및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투자비율을 30%로 설정

- *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설립시 즉시 보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 ②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투자자 수 합산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도록 함
 - * ①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②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③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 ③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을 3년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 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갖추도록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제 강화 없음
현행유지안	내용	 ●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상출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등의 투자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복수의 자사 구펀드가 합산하여 母펀드의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구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에 예외없이 합산 ❸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요건 없음
	대안명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규제대안1	내용	 ●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상출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등의 투자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 규정 ②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母펀드에 대한 구펀드의 투자비중이 30% 이상이더라도 구펀드의 투자자수를 母펀드에 합산하지 않는 예외 인정

		* 1)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2)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3)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3년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종사한자 등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 규정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갖추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1의 규제 내용 실현을 목표로 하되, 행정지도 및 공시등을 활용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이행되도록 유도
	내용	- 대안1과 유사하나, 위반시 조치 근거 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일반 사모펀드 설정시 부담 감소, 공모규제 미적용, 운용인력 보유 부담 감소 등으로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의 자율성 극대화	 즉시 보고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집합투자업자의 혼란 우려 子펀드 투자자수 합산규제의 비합리적 운용으로 사모펀드 운용효율 저해 및 이에 따른 투자손실 우려 무자격자에 의한 운용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저해 		
규제대안1	• 일반 사모펀드의 설립 모니터링을 통한 거래질서의 안정 도모 • 공모규제의 합리적인 운용 도모 • 업무집행사원 인력요건 신설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 한 거래질서 유지	• 사모펀드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사모 운용사 업무집행사원의 부담이 일부 증가		
규제대안2	• 행정지도,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자율에 따른 펀드 관리·감시 실현	•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성 부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판매회사, 수탁회사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1.6.10.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주재 시장간담회 등)	제도개선안에 반영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상시 협의하였음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21.6.23. ~ 8.2.)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미보고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子펀드 투자자수 합산 규제가 예외없이 적용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효율적인 운용 저해에 따른 수익률 저하, 투자손실 우려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요건이 없어 **업무집행사원의 전문적** 이고 충실한 운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채택하기 곤란
 - 규제대안2의 경우, 행정지도 등은 규범력과 제재 가능성이 한계가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이제까지 법령 및 감독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규율해 나가는 자율·창의적 시장을 지향해 왔으나, 최근 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 등의 자율적인 시장규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 따라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규율 이행을 담보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3. 규제목표

□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사항 중 투자비율을 명확히 하여 보고대상을 확정하고, 이를 통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으로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 □ 子펀드 투자자수를 母펀드에 합산하지 않는 예외 인정을 통해 사모 펀드 및 공모규제 합리화 □ **업무집행사원 인력요건을 신설**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다 가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일반 사모펀드의 설립시 즉시 보고사유 중 집합투자업자, 상출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투자비율을 명확히 하여 금융당국의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 금융당국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된 경우에 대해 즉 시 보고를 받는 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춤 □ 子펀드 투자자수의 母펀드 합산을 통해 공모규제 회피 시도를 저지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목적·수단간 비 례적 타당성을 갖춤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인력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전문성과 준법·유리의식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 □ 규제내용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자본시장법령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운용 주체인 **피규제자의 이익**에 해당
 - 또한, 본 규제는 유사한 타 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시행령이 위임한 범
 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된 만큼, 원활한 이행을 기대
 - * 1. (일반 사모펀드 즉시 신고규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즉시신고 규제를 참조

- 2. (子펀드 투자자수 합산 규제) 사모펀드에 공통되는 투자자수 합산 규제 참조
- 3.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 일반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 참조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시행중인 유사 제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규제를 신설/강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행 경험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어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ㅇ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업계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
- 3. 종합결론
- □ 아래의 검토 결론을 감안시 **피규제자의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 로 예상됨
 - 금융당국의 관리를 위한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설립시 즉시보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가능
 - 펀드 설정·설립시 공모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의 효율적 운용 및 투자자 편익 증대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및 업무집행사원의 전문성과 준법·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실현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